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센터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 나. 「아동복지법」 제61조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비 환수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다. 위원 수, 임기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및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아동청소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건우빌딩 3층)

○ 전 화 :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031-8075-3358)

○ 팩 스 : 031-8075-491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입안자	과장 성명	과장 도경선
	팀장 성명	아동정책팀장 윤정원
	담당자 성명·전화	유예지 (031-8075-335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지원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시설에 한한다.</p> <p>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 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p>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지원대상)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삭 제></p> <p>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11명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p>

현행	개정안
<p>1. ~ 6.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u>제14조(임기)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p>	<p><u>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④ <u>팀장</u>.....</p> <p><u>제14조(임기)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회의 및 운영, 심사 및 의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31-8075-3278)

○ 팩 스 : 031-8075-491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팀장 성명	노인요양팀장 조경임
	담당자 성명·전화	강목화 (031-8075-3278)

[별표]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안 제8조 관련)

■ 기관명 : _____

항목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점수 (감점반영후)
	계	100	
가. 설치기관 및 인력기준 적합성 (30점)	1. 관련 법 상 시설 및 인력구성의 적합성	15	
	2.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5	
	3. 대표자 및 시설장의 최근 3년 이내 노인복지기관 근무 경력 (2년 이상 : 5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1년 미만 : 1점)	5	
	4. 대표자의 6년 이내 이전 기관 최근 평가결과 (신규설치 또는 A : 5점 / B : 4점 / C : 3점 / D : 2점 / E : 1점 / 평가거부 : 0점)	5	
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한 적정 마련 여부	10	
	2.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관련 직원 교육계획 적정수립여부	3	
	3.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2	
다.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적정 마련 여부	5	
	2. 사업 계획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산 수립	3	
	3.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 ※ 보건의료, 자원봉사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 계획 등	2	
	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 건전성 및 정상 운영 가능 여부(※ 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50%이하 또는 미해당시 : 5점 / 51% ~ 70% : 3점 / 71% ~ 80% : 1점)	5	
라.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및 적정 계약 여부	3	
	2.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 적정 여부	2	
	3.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여부	2	
	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여부	2	
	5.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6.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2	
	7.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마. 지자체제량 심사항목 (25점)	1.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제7조 해당 여부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25점)	25	

감점 기준			
감점 계			△40
바.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이력	1.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업무정지일수 무관)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 18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 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대표자 포함)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2개월인 경우 : 인당 감점 10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인당 감점 5점	△20	
	2.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20	
가점 기준			
가점 계			3
사. 가점부여항목	1. CCTV 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함)	3	
심사위원 의견			
※ 심사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_____ (서명) _____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고양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전문가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라.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조정·자문하기 위한 고양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전략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전략산업과 첨단산업팀(031-8075-3472)
- 팩 스 : 031-8075-491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여 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국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실·국장, 빅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 및 도시균형개발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에서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전략산업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전략산업과장 양재관
	팀장 성명	첨단산업팀장 이종태
	담당자 성명·전화	이용택 (031-8075-3472)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중복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경력 조건을 완화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고양시와 연결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예약제 시행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함.

(안 제5조)

라.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안 제7조 및 제8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대중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대중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1)
- 팩 스 :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자격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 유형별로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행 현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장에게” 를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과장 성명	대중교통과과장 이완범
	팀장 성명	교통약자지원팀장 김기세
	담당자 성명·전화	노연진 (031-8075-296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u>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 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관련 분야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u>고양시장</u>(이하 “<u>시장</u>”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자격은 <u>관련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u></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2.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u>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4. <u>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u>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u>」.....</p> <p><u><삭 제></u></p>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생략)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 유형별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
2.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기관·단체, 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 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

제3조(위원회 회의) 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② (생략)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자격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 유형별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특별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6.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
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콜센터 또는 전화교환업무 근무경
력 1년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
격, 기술, 기능과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
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단, 법
인, 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 해당자 중 관
련분야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
무한 경력이 총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생략)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
단”이라 한다)은 고양시 관내(이하
“고양시내”라 한다)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고양시내
와 경계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
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운행대수는 수요충족률 등 특별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이동지원센터장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 및 공공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
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
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
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결하지 아니
한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교통약

교통수단 운영성과에 따라 도입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조례

제14조제4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고양시내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목적지가 고양시계를 벗어난 경우의 이용요금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의 2배로 하되, 고양시를 벗어난 구간을 적용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① (생략)

②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만료기간 30일 전까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만,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삭 제>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
.....

<삭 제>